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8일, 한민수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3.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4.17.) 상정, 심사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6.27.) 상정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위원회(2025.7.2.)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7.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민수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이사회 또한 방송통신 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 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계속되어왔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임 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이사 선임권한을 방통위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 이사 추천주체의 확대 등은 민주적 정당성, 정치후견주의의 탈피 및 정치적 독립성의 확보 등 여러 가치에 기반한 이익형량을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사 정수 증원문제도 이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한민수의원, 이훈기의원, 최민희의원, 황정아의원, 박민규의원, 노종면의원, 조인철의원, 김현의원, 이해민의원, 이정헌의원, 김우영의원, 서영교의원, 신장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o 사실상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현행 구조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이사 추천을 국회, 시민사회, 현직 직원 등으로 다원화해 공영 방송이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구조임(김현·이훈기·노종면·한민수위원). 정권에 따라 바뀌는 방송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최민희·한민수 위원)
- o 사장추천위원회를 100인 이상의 국민대표로 구성하고,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등으로 특정 세력의 독주를 방지하고자 함(김현·이훈기 위원)
- o 편성위원회 설치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로 경영진과 정치

권의 개입을 차단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김현·노종면·이정헌 위원).

- o 노조·시민단체 몫 이사 비중이 과도해 사실상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 등이 공 영방송을 장악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음(박정훈·김장겸·이상휘·최수진 위원).
- o 임직원과 시민사회 등의 이사 추천은 국민이 위임한 기구가 아니므로 대의원칙에 위배됨. 또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강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등으로 방송사의 인사권 및 경영권 침해와 헌법상 방송편성의 자유를 위반할 위험(최형두·김장겸 위원).
- o 정파적 다툼이 방송 이사회로 직접 유입되고 오히려 정치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신성범 위원).
- o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법개정 추진, 충분한 숙의와 협의가 부재 하였음(최형두·이상휘 위원).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찬성 11, 반대 3)

8. 기타 사항

소위 공청회 개최(2025.5.9.)